

조선후기 적장자 상속에 대한 역사심리학적 분석¹⁾

김진영* · 고영건**

국문요약

지금까지 조선후기 상속제의 변화에 관한 학문적인 논의는 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아직까지 조선후기 상속제의 변화와 관련해서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역사심리학에서는 역사적 사건에 기여하는 인간의 정서, 지각, 사고방식, 그리고 심리적인 대처기제 등을 분석한다. 우리가 조선후기 상속제의 변화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요인들에 기초한 해석과 심리적인 요인에 기초한 해석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조선후기 상속제도의 변화를 역사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조선후기 상속제의 변화는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이어진 임진 및 정유왜란, 1627년의 정유호란, 그리고 1636년의 병자호란 등 무려 40여년에 걸친 전란들 속에서 등장하게 된 “환향녀(還鄉女) 딜레마”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란 후 조선의 조정은 환향녀들이 가풍을 더럽혔다 해서 이혼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었고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귀가하여 종사(宗祀)를 받들고 자손을 낳으며 가세(家世)를 잇도록 허용할 수도 없었다. 환향녀들을 이혼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러한 의사결정자에게

* 서울여자대학교 / 심리학

** 고려대학교 / 심리학

1) 본 연구는 200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심리적인 불편감 또는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에 무조건 귀가시키는 것은 가계의 혈통적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장자 상속제는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적 이념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환향녀들을 내치지 않으면서도 종족의 혈통적 순수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조선후기 적장자 상속제로의 이행은 벌렬(閥閥)에 의한 관료체계의 독점과 같은 정치적인 요인, 시장 경제의 발달과 같은 경제적 요인, 친족 중심의 동족부락(同族部落)의 형성과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종법적(宗法的) 가족질서를 강조하는 예학(禮學)의 보급과 같은 문화적인 요인과 더불어 환향녀 딜레마가 야기한 불편감과 불안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적장자, 상속제, 환향녀, 역사심리학, 적응기제

1. 머리말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로는 『춘향전』, 『심청전』, 그리고 『홍부전』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홍부전』은 조선후기 사회에서의 상속제의 변화에 의해 촉발된 삶의 문제, 즉 적장자(嫡長子) 상속으로 인한 형제 간의 갈등을 다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창진, 2000: 26; 허원기, 2006: 166).

도이힐러(Martina Deuchler)는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이라는 저서에서 ‘전통 한국 사회’라는 통념은 17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지속된 한국 사회의 특징에 기초해 형성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조선후기 한국 사회의 현저한 특징은 바로 ‘적장자 상속제’가 된다. 적장자 상속은 “정실 소생의 만아들에게 조상의 제사를 단독 봉사하게 하고 재산상속에서 절대적 우대를 보장하는 제도(박훈탁, 2002: 330)”를 말한다. 조선후기와는 달리, 조선전기에는 장남과 차남 그리고 남녀 간의 구분이 없는 자녀균분상속주의(子女均分相續主義)가 원칙이었다(이수건, 1991: 58).

최재석(1983: 552-553)과 도이힐러(2003: 315-319)는 조선이 중국과는 달리, 적장자 상속을 성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종법적(宗法的) 가족질서를 강조하는 예학(禮學)의 보급, 친족 중심의 동족부락(同族部落)

의 형성, 그리고 농지의 영세화(零細化)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예학은 1623년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을 일으킨 서인과 조선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권을 장악했던 노론의 통치이념을 말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인들이 조선 사회가 적장자 상속제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지라도, 성리학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사림세력의 성장 및 인조반정 등의 정치적 변화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원인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이수건, 1991: 67).

박훈탁(2002: 339-344)은 정치·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해, 조선 후기 상속제 변화의 원인으로 16세기부터 전국에 확장된 장시(場市)와 17세기 이후에 등장하게 된 시장경제의 발달 그리고 벌렬(閥閥)에 의한 관료체계의 독점을 제안하였다. 벌렬은 인조반정 이후 핵심관직을 독점하고 세습한 가문을 말한다. 시장경제의 위협 속에서 관직을 독점하는 벌렬로 인해 관료로서의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기 어렵게 된 향촌 양반 사회는 토지재산권 및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적장자 상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박훈탁, 2002: 342-343).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선후기 상속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후기 상속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바르부(Zevedei Barbu)는 역사심리학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생활양식의 심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진실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바르부, 1983: 21). 그는 역사심리학의 목적을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준 심리적인 요인들을 추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역사심리학에서는 역사적 사건에 기여하는 인간의 정서, 지각, 사고방식, 그리고 심리적인 대처기제 등이 분석된다.

바르부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분석에서 정동적인 풍토(emotional climates)를 분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바르부, 1983: 67). 정동적인 풍토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집단이 경험하는 특수한 감정 또는 감정의 복합을 말한다. 바르부에 따르면,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공포감과 불안감 그리고 무기력감을 분석하지 않고서 경제대공황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러한 심리적인 특성들로 환원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현상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에 비해 심리적인 특성들은 결정도(degree of determinability)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바르부, 1983: 98). 하지만 정동적인 풍토가 역사적인 사건을 실질적으로 추동(推動)시켜 나가는 유일한 힘은 아닐 지라도, 실질적인 영향을 준 요인들 중 하나일 수는 있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사건과 관계된 정동적 풍토를 연구하는 것은 역사적 지식의 구체적 현실 간의 괴리와 갭(gap) 메우는 데에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에 대한 이러한 검토에 기초해 판단해 본다면, 우리가 조선후기 상속제의 변화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정동적인 풍토를 중심으로 한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후기 적장자 상속제로의 변화를 역사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조선후기 상속제의 변화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

1. 조선후기 상속제의 변화

조선 초기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조선의 재산상속제는 적자녀(嫡子女) 간에는 제례(祭禮)를 계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봉사조재산(奉祀條財産)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장남이나 차남 그리고 남녀 간의 구분이 없는 자녀균분상속주의(子女均分相續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수건, 1991: 58; 최재석, 1983: 508). 이러한 자녀균분제는 매우 강력한 법적인 보장을 받는 법정 상속제였다고 할 수 있다(김은아, 2007: 210). 예를 들면, 경국대전은 자녀들 중 장남이 만약 재산을 균분하지 않고 독점하면, 제소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국대전, 戶典 田宅條). 그리고 독점 상속에 따른 제소가 발생하는 경우, 관사(官司)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균등하게 분배하고 때로는 독점자의 상속분을 몰수하기까지 하였다(김은아, 2007: 210).

하지만 국내 학계의 분재기 연구(이수건, 1991: 70; 최재석, 1983: 552)에 따르면, 이러한 균분상속제는 17세기 중엽까지 지속되다가 그 후부터는 재산 상속에서 적장자(嫡長子)를 우대하는 차등 상속이 이루어져 결국 18세기 중엽에 이르게 되면 명실상부한 적장자 상속제로 이행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17세기 중반은 조선의 재산상속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생각된다(이수건, 1991: 70). 그렇다면, 17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자녀균분상속제를 취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장남우대의 차등 상속제로 변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2. 조선후기 상속제 변화의 원인적 요인들

선행연구들에서 조선후기 상속제의 적장자 우대로의 전환은 주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에서의 변화라는 요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정치적인 요인이다. 박훈탁(2002: 342-343)은 조선후기에 토지재산권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관료로서 정치권력을 갖게 되는 것과 적장자 상속제가 기능적인 동질성(functional equivalence)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조선과 중국은 토지가 국가의 전유물이라는 왕토사상(王土思想)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오직 관료들만이 국가를 대신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박훈탁, 2002: 339). 이러한 조건하에서 중국의 지주계급은 관료의 정치적 권위에 집착하는 것을 통해 토지재산권과 소작관계를 유지(Moore, 1968: 170-171)한 반면에, 조선의 향촌 양반들은 적장자 상속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박훈탁, 2002: 342-343).

조선건국 초기에는 과거의 급제자를 중심으로 관리를 임용하여 관직의 독점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박훈탁, 2002: 342-343). 하지만 1623년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과 노론 세력은 국혼(國婚)을 통해 별렬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하급 관료와 지방 관료를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료로서의 정치적 권위를 얻기 힘들게 된 향촌 양반사회는 적장자 상속을 통해 토지재산권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박훈탁, 2002: 342-343).

둘째, 경제적인 변화의 요인이다. 최재석(1983: 553)과 도이힐러(2003:

315)는 조선후기에 상속제가 변화하게 된 원인들 중 하나가 농지의 영세화(零細化)라고 주장하였다. 농지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전통사회에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증가되는 자녀수로 인해 균분상속제는 붕괴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최재석, 1983: 553). 도이힐러(2003: 315)는 이러한 예로 1615년에 작성된 권래(權來)의 유언장을 제시하였다.

나는 선대에서 세습재산(遺業)을 받았다. 토지와 노비들은 집안 식구들보다 많지만 전처나 후처가 낳은 딸들도 매우 많다. 그러므로 이들 각각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기에는 부족하다. 만약 이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면 직계 손자들(宗系, 문자 그대로 性을 계속 이어받는 손자들)이 궁핍을 면할 수 없어 조상 봉사를 계속할 수 있을 지 매우 걱정스럽다. 아들과 딸들이 부모들에게 똑같이 신체 외양을 받았으니, 사람으로서 감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외의 원칙(內外之體)을 통해서 볼 때 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종손(宗孫)은 아무리 극빈해도 조상의 묘에 향을 사르는 일은 차마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와 반대로 다른 성(異性)을 가진 손자들은 학식이 있더라도, 외가의 조상에 대하여 성의를 표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재산을 분배할 때에 이르러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 아들과 딸들 사이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남우대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기, 즉 조선 후기에 조선의 토지생산성은 평균적으로 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영학, 1991: 370). 이처럼 토지생산성이 2배로의 상승했다는 것은 토지의 영세성으로 인한 토지의 분할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농지의 영세화 요인이 장남우대상속으로의 이행을 설명하는데 그다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프랜시스 슈(Francis L. K. Hsu)의 주장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한 주장들이 오류임은 중국의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인의 대다수는 대대로 그들의 관습에 따라 균등상속을 행하여 왔고 따라서 대부분의 농가는 경제 효율면에서의 최적 크기(7에이커)에 미달할 정도로 영세화되었다. 중국인들은 균등분배원칙이라는 최대중요성 때문에 최고의 경제적 이윤과는 배반되는 분배를 계속하여 왔다(슈, 1985: 63).

박훈탁(2002: 336)은 토지의 영세성 때문에 양반사회에서 적장자 상속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주장은 적장자가 아닌 양반들이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부연설명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 한, 적장자 상속제로의 이행 현상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적장자가 아닌 양반들이 단지 집안의 재산이 영세하다고 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적장자 상속을 묵인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시장경제의 발달이 조선후기 상속제의 주요한 변화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박훈탁, 2002: 340).

16세기에 조선사회는 새로운 영농기술의 도입으로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또 특용작물의 재배와 같은 상업적 농업의 발달로 장시(場市)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16세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장시와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등장하게 된 시장경제는 토지가 없거나 영세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대신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에서의 역동적인 변화는 재산이 영세해진 향촌 양반사회가 토지재산권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장자상속에 집착하도록 만들었다(박훈탁, 2002: 343).

셋째, 사회적인 요인이다. 최재석(1983: 552)과 도이힐러(2003: 317)는 조선 후기에 상속제가 변화하게 된 주요한 원인들 중 하나가 동족관념의 발달과 더불어 친족 중심의 동족부락(同族部落)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도이힐러(2003: 388)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유교화에서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부계 종족체계가 발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종족체계는 중국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구조화되었다.

부계의 조상제례를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동족 간의 결합을 촉진할 수 있다(최재석, 1983: 552). 제사는 친족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며 조상의 사당 앞에 모인 남계 친족들 사이에 같은 후손이라는 의식과 결속감을 고양시켜 주었다(도이힐러, 2003: 389). 이러한 동족의 중심은 제사를 모시는 장남이나 종손에 있기 때문에 동족의 결합이 촉진되면 될수록, 장차(張次) 그리고 남녀 간 차이가 심화될 수 있다(최재석, 1983: 553).

넷째, 문화적인 요인이다. 최재석(1983: 552-553)과 도이힐러(2003: 313)는 조선후기에 상속제가 변화하게 된 주요한 원인들 중 하나로 종법적(宗法的) 가족질서를 강조하는 예학(禮學)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점을 제시하였다. 도이

힐러(2003: 246-249)에 따르면, 조선의 조정은 건국 후부터 지속적으로 주가례(朱子家禮)를 토착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결국 건국 후 250여년이 지난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조선의 양반사회가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도이힐러, 2003: 388). 실제로 조선은 건국 후 80년이 지난 1471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적장자에 의한 제례(祭禮)의 계승을 법제화하였고, 1543년에는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서 서자의 상속권 조항을 폐지하는 등 유교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박훈탁, 2002: 331).

예학에서는 조상숭배(祖上崇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제례를 특히 강조하였다. 서인이 예학을 정책적으로 보급했던 17세기 후반에 작성된 양반가문의 분재기에는 예제(禮制), 예전(禮典), 그리고 예문(禮文)에 기초한 가계의 계승과 선조 봉사를 열망하는 재주의 소망이 담긴 대목이 많이 등장한다(박훈탁, 2002: 335). 이러한 조상숭배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자접합(親子接合)을 중시하게 된다. 이처럼 제사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상제사를 윤회(輪回)할 경우, 소홀히 하게 되거나 유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장자전행(長子專行)으로 고정시키게 된 것이다(최재석, 1983: 552). 1699년에 김명열(金命說)은 유언장에서 윤행 관행 때문에 종가에서 제사를 봉사하는 법이 무너진 사실을 개탄한 바 있다(도이힐러, 2003: 316). 따라서 조선전기에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목적이 자녀들을 위한 일종의 경제적 보험이었던 반면에, 조선후기에는 부계 자손들의 제례를 지속시키기 위한 문화적 장치로 바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도이힐러, 2003: 313).

Ⅲ. 조선후기 상속제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의 제한점

조선전기의 자녀균분상속제(子女均分相續制)에서 조선후기의 적장자 상속제로의 변화가 초래한 중요한 결과는, 재산상속 과정에서 장차(張次)와 남녀간의 차이가 심화된 것이다. 하지만 조선후기 상속제의 전환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조선후기 상속제에서의 핵심적인 변화 내용들 중 일부만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장경제의 발달이 조선후기 상속제의 주요한 변화요인 중 하나라는 박훈탁(2002: 340)의 주장은 왜 조선후기에 적장자 상속제로 이행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기보다는 그러한 상속제 상의 변화를 왜 적장자 이외의 다른 형제들이 저지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박훈탁(2002: 340)의 주장대로, 조선후기의 적장자 상속제는 향촌의 양반사회가 경제적으로 피해를지는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장자 이외의 형제들이 세력다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자 이외의 형제들은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 생활의 터전을 찾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봉제사를 통해 유학호(幼學戶)로서의 신분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장자 상속을 묵인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장차(張次) 간의 차별이 용인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줄 지라도 그러한 차별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벌례에 의한 관직의 독점 때문에 조선후기 향촌 양반사회가 토지재산권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속제의 변화를 도모하게 된 것이라는 박훈탁(2002: 342-343)의 설명은 적장자 상속제로 변하게 된 원인이 아니라, 단독 상속이 불가피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것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설명은 왜 자녀균분상속제가 유지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뿐이지, 왜 장차(張次) 간의 차별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처럼, 장남이 아닌 또 다른 아들에 의한 단독상속 형태(슈, 1985: 48)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예학의 보급과 동족관념의 발달이 조선후기에 상속제가 변화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라는 최재석(1983: 552-553)과 도이힐러(2003: 313-317)의 설명은 남녀 간의 차별이 심화된 원인을 설명해주는 것일 뿐 장차(張次) 간의 차별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성리학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사림세력의 성장 및 인조반정 등의 정치적 변화가 적장자 상속제로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이수건(1991: 67)의 해석도, 최재석(1983: 552-553)이나 도이힐러(2003: 313-317)의 설명과 유사한 제한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해석 역시 결국 그러한 정치적 변화의 주역들이 예학을 보급하고 종법적 가족질서를 정치적으로 촉구했던 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

이다.

어떤 의미에서 예학과 남녀 간의 차별은 동의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박훈탁, 2002: 335). 왜냐하면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한 예학에서는 혈연이 남계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정궁식, 2001: 198).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설(多說)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갑골문의 원의(原意) 풀이가 가장 간명한 해답을 주는 것 같다. 조상이라는 단어에서의 祖자는 보일 시(示)와 구차할 차(且)가 합쳐진 형태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갑골문에서 且는 남근(男根)의 형상을 하고 있다(김용옥, 1989: 144). 따라서 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且가 보이는(示) 윗사람을 경배하는 것이다. 갑골문에서 보일 시(示)는 사람의 형상으로 많이 나타나므로, “且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남녀 간의 차별에서와는 달리, 장차(張次) 간의 차별과 예학은 동의어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같은 유교적인 이념을 공유했던 중국의 사례를 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슈(1985: 49)는 중국이 지난 2,000년 동안 적장자 상속제가 아닌, “형제 간 위계질서의 부재 및 균등 상속”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경우 장자를 선호하는 것은 이름에 불과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의 장자 선호는 형제자매 중 수위에 있음을 인정하여 통상 상속의 몫에서 여분의 몫을 주는 정도로만 우대받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조선후기에 적장자는 가족 내의 “가장 이상적이면서 바람직한 대표”로 우대받았다(도이힐러, 2003: 388-9).

조선의 향촌 양반사회는 기본적으로 건국 후 예학의 이념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거의 300년간이나 적장자 상속제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다(박훈탁, 2002: 330). 따라서 향촌의 양반사회가 거의 300년간이나 적장자 상속제를 거부해 오던 것을 17세기 중반 이후에 비로소 수용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변화는 예학의 보급 이외의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선후기 상속제의 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남녀 간의 차이를 유발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는 있지만, 장차(張次) 간의 차별을 심화시킨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해리스(Marvin Harris)는 때때로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의식은 스스로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해리

스, 1982: 18). 그에 따르면, 특정 문화적인 체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내포된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집단적 환상체계”(collective dream work)에 빠진 채 생활하게 된다(해리스, 1982: 18). 이런 점에서 그는 특정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꿈을 설명하기 힘든 것과 유사한 상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분석이 조선후기 상속제의 변화를 유발한 요인에 관해 충분히 해명해 주지 못할 경우, 그 이유는 그러한 변화가 집단적 환상체계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심리학적 분석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요인들에 기초한 역사적 지식과 현실 간의 거리와 갭(gap) 메우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후기 상속제의 변화에 대한 역사심리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조선후기 상속제의 변화에 영향을 준 조선후기 전란의 시대사적 영향과 그로 인해 파생된 “환향녀(還鄕女) 딜레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V. 환향녀(還鄕女) 딜레마와 상속제의 변화

1. 환향녀 딜레마

조선후기 상속제에서의 변화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17C 중엽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우리 역사에서 1592년에서 1598년까지의 임진·정유왜란, 1627년의 정유호란, 1636년의 병자호란 등의 조선조 최대의 전란이 일어난 직후가 된다.

조선후기의 전란들 속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포로가 되어 노예로 끌려갔다. 병자호란 후에 최명길은 가도(蝦島)의 명군 지휘부에 보낸 자문(咨文)에서 청군에 끌려간 조선인의 수를 50만 명으로 추정했다(한명기, 2008a: 26). 또 나만갑(羅萬甲)이 기록한 병자록(丙子錄)에는 선양에서 속환(俗賣)한 사람의 수만 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주돈식, 2007: 77).

이러한 숫자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수가 약 5만에서 10만 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오귀환, 2005: 139), 5배에서 12배나 많은 것이다. 인조 16년 6월에 우의정 신경진은 포로로 잡혀갔던 부인들의 문제가 “온 나라의 백성들 중 태반이 연루”된 것으로 현의하였다(인조실록, 1990: 35집 23면 참조).

조선후기 전란기의 우리 역사는 사실상 여인의 수난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병자호란 후에 속환이나 도망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조선으로 되돌아 온 사람들 중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심한 고초를 겪어야 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되돌아 온 여인들을 의미하는 환향녀(還鄕女)들은 “오랑캐에게 실절(失節)한 여자”라는 사회적인 비난 때문에 극심한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한명기, 2008b: 26). 화냥년이라는 말이 환향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환향녀들이 당시에 겪었을 사회적인 고초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조 16년 3월 11일에 조정에는 환향녀의 이혼 문제와 관련된 상반된 내용을 담은 두 개의 호소문이 올라왔는데 그 주인공은 신평부원군(新豊府院君) 장유(張維)와 전 승지 한이겸(韓履謙)이었다(인조실록, 1990: 35집 12면 참조).

장유는 자신의 외아들과 속환되어 돌아온 며느리가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 이유는 실절한 며느리에게 선조의 제사를 계속 맡길 수 없으니 아들이 새 장가를 들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조적으로 한이겸의 사연은 자신의 딸이 속환되어 왔는데, 사위가 딸을 버리고 새 장가를 들려고 하는 것이 원통하다는 내용이었다. 이 때 좌의정 최명길(崔鳴吉)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신이 고로(故老)들에게 들으니, 선조 조에 임진년 왜변이 있을 뒤에 전교가 있었는데, 지난해 성상의 전교와 서로 부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항에서 전하는 바로 말한다면, 그때 어떤 종실이 상소하여 이혼을 청하자 선조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어떤 문관이 이미 다시 장가를 들었다가 아내가 쇠환되자 선조께서 후취 부인을 첩으로 삼으라고 명하였으며, 그 처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정실 부인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재상이나 조관(朝官)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처를 그대로 데리고 살면서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아 명문거족이 된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이 어찌 예는 정(情)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때에 따라 마땅함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한 가지 예에 구애되어

서는 안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인조실록, 1990: 35집 12면).

이 때 최명길은 속환을 통해 돌아온 부녀자들 모두가 실절했다고 단정해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청으로 끌려갔던 여인들 가운데는 회유와 협박에도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인들 중에는 조선 여인들의 절개에 감명을 받아 함부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조정에는 최명길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주돈식, 2007: 129). 이런 점은 인조실록(仁祖實錄)에서 사신(史臣)이 최명길의 주장을 맹렬히 비난하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사평(史評)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으니, 이는 절의가 국가에 관계되고 우주의 동량(棟樑)이 되기 때문이다. 사로잡혀 갔던 부녀들은, 비록 그녀들의 본심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변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절의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절개를 잃었으면 남편의 집과는 의리가 이미 끊어진 것이니,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최명길은 비뚤어진 견해를 가지고 망령되게 선조(先朝) 때의 일을 인용하여 현의하는 말에 끌어버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추어 진달하였으니, 잘못됨이 심하다....아, 백년 동안 내려온 나라의 풍속을 무너뜨리고, 삼한(三韓)을 들어 오랑캐로 만든 자는 명길이다. 통분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인조실록, 1990: 35집 12면).

전란 후 조선의 조정은 환향녀들이 가풍을 더럽혔다 해서 이혼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었고,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귀가하여 종사를 받들고 자손을 낳으며 가세를 잇도록 허용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인조는 궁여지책으로 회절강(回節江)을 지정한 후 “조선으로 들어오는 입구 개울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부정이 씻어진다.”(주돈식, 2007: 130)는 명을 내려 그 이후로는 환향녀들의 정절 여부를 묻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조의 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반 계층에서는 환향녀 문제와 관련하여 유교적 이념에 기초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세한 가운데 찬반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었다(주돈식, 2007: 130).

이러한 환향녀 딜레마는 조정에서 격렬한 담론을 생산해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조 16년 3월에 조정에서 환향녀의 처우에 관한 문제가 논의된 이후로 인조 18년 9월까지 지속적인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인조실록, 1990: 35집 98면 참조). 또 이러한 논쟁은 현종대까지도 이어져 현종 8년 8월에 출처(出妻)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환향녀의 자녀들이 동서반의 정직(正職)에 서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현종실록, 1991: 37집 578면 참조). 이때에도 조정에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섰으나 현종은 선대의 뜻대로 차별을 두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

2. 환향녀 딜레마와 심리학적 적응기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교적 이념에 기초해 환향녀들을 이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본인이 의식을 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불편감 또는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다. 부인이 전란 때 자결했던 우의정 이성구(李聖求)조차도 “잡혀간 부인들이 의지할 곳을 잃도록 하는 것은 불쌍”하다고 말했던 점(인조실록, 1990: 35집 23면 참조)을 고려해 본다면, 것처럼 가련한 사람들이 의지할 곳 없도록 만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심리적인 불편감(혹은 죄책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인조의 명을 받들어 나라에서 정해진 세례(洗禮)의식을 치르기만 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환향녀들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유교적 이념의 측면에서 볼 때, 가계의 혈통적 순수성을 오염시킬 가능성 또는 가풍을 더럽힐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부인이 환향을 한 후에 자녀가 태어날 경우, 때때로 그 아이가 남편의 핏줄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환향한 후 충분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에도, 부인의 몸이 이미 정절을 잃은 상태였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환향녀 딜레마는 조선의 양반계층에 심각한 심리적인 갈등을 유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다루는 대표적인 심리적인 기제 중 하나가 바로 적응기제(adaptive mechanism)이다(Vaillant, 1997: 29).

1994년에 출간된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 열람』에 의하면, 방어기제 혹은 적응기제는 “개인이 내부 혹은 외부의 위협과 스트레스 요소들을 지각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기능하는 심리적인 과정”으로 정의되어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751). 비록 모든 적응기제가 무의식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적응기제는 주체가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의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적응기제는 문제상황에서 문제상황 자체를 창조적으로 변형시켜, 결과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Vaillant, 1997: 17).

역사심리학의 맥락에서 적응기제를 분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사건과 관계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논리 자체보다는 그러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도록 배후에서 영향을 준 정서적인 조건을 분석하게 된다. 적응기제와 관계된 행동에서는 외형상의 논리만으로는 실제의 사건을 의미 있게 설명하기 어려우며 사건의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의 이면, 즉 정서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환향녀 딜레마와 적장자 상속

환향녀 문제는 어느 한 쪽으로도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향녀 문제에 대해 어느 한 쪽으로 일방적인 결론을 내릴 경우 심리적으로 불편감 또는 불안감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시의 양반들은 환향녀 문제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환향녀의 존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바로 이러한 조건 하에서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다른 아닌 적장자 상속제인 것이다. 적장자 상속제는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적 이념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환향녀들을 내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서도 종족의 혈통적 순수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대다수 문화권에서 여성의 순결은 고귀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결혼 시 처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것은 가문의 수치로 받아들여졌다.

윤가현(1998: 130-132)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 신랑은 초야를 치른 후 만약 신부의 처녀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교적 전통 논리에 기초하여 신부를 쫓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양 사회에서 신부의 처녀성을 입증하는 수단은 신부의 처녀막에서 나온 핏자국이었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믿음은 결코 과학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속설과는 달리, 처녀막의 존재 여부가 여성의 성교 경험 여부에 대한 지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윤가현, 1998: 133). 실제로 일부 여성은 처녀막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기도 하며, 심한 운동을 할 경우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동·서양 모두에서 신부는 첫날밤에 처녀성에 대한 관습적인 검증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첫날밤에 신부가 처녀성 검사에 합격하면 신랑 측에서는 잔치를 벌였다(윤가현, 1998: 132). 이러한 관습은 서구의 문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는 신부의 처녀성을 입증하기 위해 첫날밤에 하얀 침대보나 잠옷에 피가 얼룩져 있는지를 검사했으며 그 후 이러한 검사에 통과하면 잔치를 벌였다.

장자의 경우에는 통상 일종의 통과의례로서의 처녀성 검사를 거친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경우에는 장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모의 순결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둘째부터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핏줄이 의심스러워 확인하고자 시도하더라도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첫째라고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전란 후에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진 시점에서 처녀성 검사는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 관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볼 때 적장자상속제는 환향녀 딜레마와 관련해서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첫 번째 출산의 경우, 비록 완벽하지는 않을 지라도, 처녀성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통해 가계에서의 혈통적 순수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형제자매들보다도 더 높다는 점에서 전란으로 인해 크게 증폭된, 가계가 오염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비단 환향녀뿐만 아니라 양반의 부녀자들 중에서 전란 중에 수치스러운 일을 겪거나 겪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처녀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첫째를 출산한 이후에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러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불의의 사고를 겪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를 겪은 것으로 오해를 할 경우,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불확실성이 증가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적장자 상속은 가계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전판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전란 이후의 조선 양반 사회에서 장차(張次) 간의 차별이 심화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선후기의 전란들은 재산 상속 과정에서 남녀 간의 차별이 이루어져야 할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전란에서 부녀자들이 신체적인 모욕을 겪을 경우, 유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자체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는 가문의 재산을 유실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재산과 관계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환향녀 딜레마는 조선후기에 상속 과정에서 남녀 간의 차별과 장차(張次) 간의 차별이 심화되는 중요한 계기적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아직까지 조선후기 적장자 상속제로의 이행과 환향녀 딜레마 간 연관성이 논의된 문헌은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것은 환향녀 딜레마가 “집단적 환상체계”(해리스, 1982: 18)와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정 문화적인 체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내포된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집단적인 무의식의 체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후기 상속제의 변화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해석방식은 조선 후기의 상속제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우대받

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는 있지만, 장차(張次) 간의 차별을 심화시킨 요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미 있는 설명을 거의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이 사회·문화적인 변화과정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록 사후적인 해석의 형태를 취할 지라도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춘 역사심리학적인 분석은 그러한 인식적 간극을 메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춰온 문제는 왜 성리학적인 이념에 부합되에도 불구하고 거의 300년간이나 배척받아 왔던 적장자 상속제가 조선 후기에 비로소 양반 사회에 수용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조선 후기에 적장자 상속제가 수용된 것은 환향녀 딜레마가 야기한 심리적인 불편감과 불안감을 해결하는데 유용했던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환향녀 딜레마는 당시의 양반들이 적장자 상속제를 더욱 더 매력적인 제도로 인식하도록 의사결정 과정의 배후에서 영향을 준 정서적인 요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환향녀 딜레마와 적장자 상속제 간 연관성을 언급한 문헌은 존재하지 않을 지라도, 역사심리학적인 분석을 위한 역사적 자료들까지 불명확한 것은 아니다. 환향녀 문제는 “은 나라의 백성들 중 태반이 연루”된 문제(인조실록, 1990: 35집 23면 참조)였다. 또 조정에서 이혼 문제 및 그 자녀들의 처우 문제를 둘러싼 환향녀 논쟁은 현종대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현종실록, 1991: 37집 578면 참조). 그리고 인조실록과 현종실록의 환향녀 관련 논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환향녀를 축출하기로 한 결정은 의사결정자에게 심리적인 불편감(또는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환향녀를 용인하기로 한 결정은 가풍을 더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자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당시의 양반들이 환향녀 문제에서 심리적인 불편감 또는 불안감을 심각하게 경험하면 경험했을수록, 이들의 눈에 적장자 상속제는 매력적인 제도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의 문화적 믿음 속에서 적장자 상속제는 환향녀를 출처하지 않고도 가풍을 더럽힐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문화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환향녀 딜레마와 적장자상속제로의 변화 간 관계를 인과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조선 후기에 적장자 상속제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 환향녀 딜레마 때문에 혹은 환향녀 딜레마

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조선후기 양반 사회에서 건국 후 거의 300년간이나 거부해 왔던 적장자 상속제가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러한 제도가 성리학적인 이념에 잘 부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적장자 상속제가 성리학적인 이념과 부합되지 않았다면, 당시의 양반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후기 적장자 상속제로의 이행은 벌렬(閥閥)에 의한 관료 체계의 독점과 같은 정치적인 요인, 시장경제의 발달과 같은 경제적 요인, 친족 중심의 동족부락(同族部落)의 형성과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종법적(宗法的) 가족질서를 강조하는 예학(禮學)의 보급과 같은 문화적인 요인과 더불어 환향녀 딜레마가 야기한 심리적인 불편감과 불안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조선후기에 양반들이 환향녀 딜레마와 관련해서 경험했던 정서적인 체험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적장자 상속제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적절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용옥. 1989. 『여자란 무엇인가?』. 서울: 통나무.
- 김은아. 2007. “조선전기 재산상속법제에서 여성의 지위.” 『법학연구』 28. 207-226.
- 김창진. 2000. “놀부가 흥부를 내쫓은 까닭은? - <흥부전>의 주제는 ‘공존공영’이다.” 『국제어문』 22. 3-37.
- 도이힐러. 2003.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서울: 아카넷.
- 바르부. 1983. 『역사심리학』. 서울: 창작과 비평.
- 박훈탁. 2002. “조선후기 적장자 상속의 역사적 기원: 시장과 벌렬의 정치 경제.” 『대한정치학회보』 10. 329-347.
- 슈. 1985. 『이에모도』. 서울: 현상과 인식.
- 오귀환. 2005. 『사마천, 애덤스미스의 빵을 치다』. 서울: 한겨레신문사.
- 윤가현. 1998.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이수건. 1991. “조선전기의 사회변동과 상속제도.” 『역사학보』 129. 23-76.

- 이영학. 1991. “조선 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농촌사회의 변동.” 제20회 동양학학술회의록.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인조실록. 1990. 『인조실록』.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정금식. 2001. “조선전기 주자가례의 수용과 제사승계 관념.” 『역사민속학』 12. 17-198.
- 주돈식. 2007. 『조선인 60만 노예가 되다』. 서울: 학고재.
- 최재석. 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 일지사.
- 한명기. 2008a. “병자호란 다시읽기” 서울신문 12월 3일자. 26.
- 한명기. 2008b. “병자호란 다시읽기” 서울신문 12월 3일자. 26.
- 해리스. 1982. 『문화의 수수께끼』. 서울: 한길사.
- 허원기. 2006. “홍부전의 인성론적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19. 163-190.
- 현종실록. 1991. 『현종실록』.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uthor.
- Moore, Barrington. 1968.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 Vaillant, George. E. 1997. *The Wisdom of the Ego*.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Abstract -

A Historical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Primogeniture of Late Chosun Dynasty

Kim, Jin-young* · Young-gun Ko**

The academic discussion on the changes in the inheritance system of the late Chosun dynasty has been mainly focused on its political, economical, societal or cultural factors.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changes in the inheritance system of the late Chosun dynasty. Historical psychology analyzes emotions, perceptions, ways of thinking and coping strategies of human beings which have contributed to historical events. In order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changes in the inheritance system of the late Chosun dynasty, it seems necessary to integrate organically the interpretations based on political, economical, societal and cultural factors with the interpretation based on psychological factors. For that reason,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settlement of primogeniture system in the late Chosun dynasty from a standpoint of historical psychology. That settlement seems to be closely related with the "*Whan-Whyang-Nyu* (還鄉女, returnee females)" dilemma which appeared on the stage of history during the period of consecutive wars over forty years including Imjin-Jeongyoo war (1592~1598), the Jeongmyo war (1627) and the Byungja war (1636). While going through these wars, the Chosun dynasty could not but confront a dilemma: neither could it force the returnee females to divorce their husbands, nor could it let them enjoy their life as

* Seoul Women's University / Psychology

** Korea University / Psychology

they were living before the war as if nothing had happened. If it made the returnee females get divorced, then its family members would suffer from a guilty conscience. On the other hand, if it permit the returnee females to come back home and to carry on a family line, the anxiety over the contamination of pure blood lineage of the family would be evoked. Under these situations, not only did the primogeniture system go well with the doctrines of Chu-tz including the customary formalities of a family, but it could guarantee the purity of family blood lineage without rejecting the returnee females. In this sense, it might be said that the switching to the primogeniture inheritance system in the late Chosun dynasty would had been resulted from combination of multiple factors: political factors such as the monopoly by bureaucracy due to factionalism, economical factors such as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societal factors such as the formation of a village community of the same blood, cultural factors such as diffusion of Courtesy Study (禮學) which emphasized clan rules of familial order, and psychological factors to deal with the guilty feeling as well as anxiety induced by the *Whan-whyang-neo* dilemma.

Key Words : Primogeniture, Inheritance System, Historical Psychology,
Whan-Whyang-Nyu(還鄉女, returnee females), Adaptive
Mechanism

[2009.1.28 접수] [2009.5.6 게재확정]

제1저자 **김진영**은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관심분야는 임상 심리학적인 지식을 한국 문화에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주요논문으로는 “중용과 심리학적 적용기제의 비교” 『동아연구』 제55집(2008), “한국인의 정서적 지혜: 한의 싹힘” 『정신문화연구』 제28집(2005) 등이 있다. ■ E-mail : kimjy@swu.ac.kr

교신저자 **고영건**은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관심분야는 임상 심리학적인 지식을 한국 문화에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주요논문으로는 “중용과 심리학적 적용기제의 비교” 『동아연구』 제55집(2008), “한국인의 정서적 지혜: 한의 싹힘” 『정신문화연구』 제28집(2005) 등이 있다. ■ E-mail : elip@korea.ac.kr